



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KAS 업무표장등록 및 사용 권장 안내

1. 우리원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정한 제품인증기관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요령에 의거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동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제품에 표시할 마크를 통일하기 위하여 불임의 V-체크마크를 도안, 2008.6.20일자로 특허청에 KAS 업무표장으로 등록하였습니다.

2. KAS 인증기관인 귀 기관에서 인증해준 업체의 제품에 불임의 인증마크 사용 부착을 권장하오니,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동 마크의 인지도 제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1. KAS 업무표장등록증 사본 1부.

2. V-체크마크 도안 및 작도법. 1부 끝

기술표준원장



수신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,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, 한국전자파시험연구원장,
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,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, 한국전기연구원장,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,
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

전결 07/08

화공사무관

박순덕

과장

이세광

국장

송재빈

협조자

시행 계량측정제도과-706 (2008.07.09.)

접수

우 427-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/ <http://www.mke.go.kr>

전화 02-509-7231 전송 02-509-7414 / sdpark@ats.go.kr

/ 공개